

의안 번호	2498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1. 11.(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2.(화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의 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출산축하용품 정의 신설(안 제2조제4호)
  - 출산축하용품: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
- 출산양육지원사업 내용 신설(안 제3조)
  - 출산양육지원사업: 출산양육지원금, 출산축하용품
- 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조문 번호 및 제목 변경(안 제3조의2)
  - (당초) 제3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
  - (변경) 제3조의2(지원대상)
- 출산양육지원 내용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(안 제3조의2, 제4조제1항 및 제3항)
  - (당초) 출산양육지원금
  - (변경) 출산양육지원사업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, 안 제5조제2항)
  - (당초) “영아” 라 함은, “출산양육지원금” 이라 함은, 첨부하여야
  - (변경) “영아” 란, “출산양육지원금” 이란, 첨부해야
- 별지 제1호서식 변경 및 별지 제4호, 제5호서식 신설

- 별지 제1호서식(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 중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란에 출산축하용품 추가
- 별지 제4호서식: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장(동보관용)
- 별지 제5호서식: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장(구청용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제1항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외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해 제도 신설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
-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및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,
- 상위법인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